

## 山林養苗의 構造轉換

本會 理事 李 在 石

우리는 只今 開放化時代에 살고 있다 開放化의 물결을 타고 今年에도 農產物 輸入額이 30億 \$을 벌서 넘어섰다고 한다.

林產物도 年末이면 輸入額이 10億 \$을 육박한다고 한다.

이 輸入 農產物의 價格이 國內產值格과는 比較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싸게 들어오기 때문에 農사를 지어서는 收支를 마출수가 없어서 簡은 이들은 모두 農村을 떠나버리고 現在 農村人口가 全体人口의 20%인 8百万이라고 하지만 이 8百萬名도 勞動力이 있는 사람들은 農工併進政策으로 세운 工場에 나가고 農村에 農業勞動力은 脫空狀態라 할 수 있다.

그래서 政府도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을 制定해서 우리 農業의 構造的모순점을 是正해야겠다 해서 專業農가, 營農法人, 委託營農會社等을 育成하기 위한 財源調達과 稅制上의 惠扱을 줄 内容을 骨子로하는 法案을 이번 定期國會에 提出해 놓고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 農業이 輸入農產物과 競爭을 하기 위해서는 只今과 같은 密細所存 規模로서는 우선 機械化를 試圖할수가 없다.

이와 같은 狀況은 林業이나 山林養苗도 그 맥락을 같이한다고 보아진다.

農村勞動力의 脫空狀態는 林業이고 山林養苗과 同에 같은 問題點이 되어 있어 林業 山林養苗 共히 그 構造的 轉換 對策을 講究 해야하고 따라서 機械化를 서둘지 않으면 지금 서 있는 이자리에서 주저 앉아야한다는 結論이 나온다.

그러나 우리 山林養苗에 있어 先 構造改善 后 機械化問題를 施行함에 있어 여러가지 어려운 問題가 展現한 것은 事實이다.

먼저 이 養苗構造改善 問題는 制度的 모순點에서 비롯된다.

山林法 第45條는 山林種苗는 아무라도 生產 할수 없는 性質의 것임으로 山林用 苗木의 販賣를 業으로 하고자하는者는 山林法施行令이 정하는 바에 따른 資格者가 市道에 登錄함으로서 山林種苗를 生產販賣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問題는 이 山林法 本法精神과는 달리 이 山林法 第45條의 단서에 마을과 學校가 養苗를 할수 있는 길을 터 놓았고 또 山林法施行令 第45條에서 山林種苗販賣業者の 資格을 規定한 内容을 보면 山林契 山林組合 山林組合中央會가 각己 山林種苗生産販賣業이 可能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余他 山林種苗 販賣業의 資格도 거의 開放되다 싶이하여 事實上 山林種苗生産販賣資格을 規定한 意味는 상실되어 國民皆養苗가 可能하도록 되었다.

이것이 오늘날 山林養苗의 構造改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山林法 第45條나 山林法施行令 第45條를 再檢討해서 國民皆養苗가 되지 않도록 山林養苗 資格 基準을 높여야 될줄 안다.

事實 따지고 보면 이 山林種苗生産 보다 더 높은 技術을 林業에서 찾아 보기 어려운 것이다.

이 資格基準을 높임으로서 우선 그 數를 줄일 必要가 있다.

그 다음은 山林組合이 養苗에서 손을 떼는 일이다.

山林組合이란 本來가 林業人과 같이 事業을 競爭하는 團體가 아니다.

林業個個人이 할수 없는 公共業務를担当해야 한다.

山林信用業務를 맡아서 造林, 育林, 養苗, 林產하는 사람들에게 林業金融을 해서 林業이 살 수 있게 도와 주어야한다.

또 산불이다. 山林病虫害等 林業危害에서 安定을 節謀하도록 山林保險業務를担当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時急한 林業勞動問題에 当面한 우리는 林業專業勞動者를 確保하고 訓練하고 그들의 報酬厚生 福祉對策을 講究하여 林業勞動供給에 힘써 林業人을 도와 주어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林產物共同販賣 林業共同施設利用等 山林組合이 할일은 泰山과 같다.

이러한 일들은 뒷전으로 미루고 個人事業으로도 얼마든지可能한 山林養苗와 造景을 해서 營利事業을 個人과 公法人이 競爭하는 것은 오늘 날 우리가 부르짖고 있는 經濟民主化에逆行하는 일들이다. 昨今 造林物量이 急激히 줄어 年間 造林物量이 3万ha内外고 여기에서 國有林造林物量을 빼면 年間 民營養苗는 8千万本에 가깝다.

이量을 가지고 山林法이나 山林法施行令에 養苗資格의 範圍가 거의 開放되다 싶이 한데다가 山林組合이 折半以上養苗를 하니 一般養苗의 경

우 1人当 平均 年生產量이 30万本에 그 苗木代가 外形으로 3千万원 程度다.

그래서 企業養苗 1人當 年間 純利益은 暴雨나凍害가 없이 平年作일 경우 3百万원 内外이니 이것을 가지고는 專門業이 우선 될수가 없다.

따라서 機械化를 하라고 하지마는 機械化를 할 일거리가 안된다.

이 山林養苗의 機械化 問題는 앞에서 말한 量도 量이지만 現行 種苗事業実施 要領을 全面廢止改正하지 않는限 그 規定이 機械化를 할수 있게 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山林養苗의 專門化는 어렵고 결국은 너도 안되고 나도 못사는 結果를招來한다.

그래서 이 길을 모면하는 길은 山林種苗生產資格을 높이고 養苗指定生產制度를 止揚하는 일이다.

그리고 하루 速히 施業의 機械化를 할수 있도록 山林種苗事業実施要領을 改正하여야 한다.

따라서 種苗価格도 政府가 定하는 方途를 탈피 하여야 한다.

그래서 市場性 原理에 依하여 優良한 健苗를 番값에 生產하는 것이 造林에 需給되어져야 한다.

農村에 사람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보다 더 어려운 時點에 서서 너도나도 조금씩 나누어 호미로 밭을 매는 養苗는 이제 그 막을 내릴때가 되었다.